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3. 4. 양순경의원 외 3인

나. 회부일자 : 2008. 3. 5.

다. 상정일자 : 2008. 3. 10.(제14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양순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출입 및 방청의 제한에 대하여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82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중 "**의장이 허가한 자**"를 "**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 자**"로 한다.

○ 제83조(방청의 허가) 중 "**의장은**"을 "**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**"로 한다.

○ 제85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제①항 문구 전체를 삭제하고 "**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,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위원회**"에서 교부 한다. 로 개정

○ 제86조(방청의 제한)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.

- 의장, **위원장이(삽입)**

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- 의장, **위원장은(삽입)**

○ 제87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제6호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·녹화·촬영행위
- 의장 또는 **위원장의(삽입)**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○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0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와 제83조 및 제85조를 인용하여 사실상 의회운영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절차상 위배됨이 없이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없 음

5. 소 수 의 견

" 없 음 "

6. 토 론 요 지

" 없 음 "

7. 심 사 결 과

" 원 안 가 결 "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 중 "**의장이 허가한 자**"를 "**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 자**"로 한다.

제83조 중 "**의장은**"을 "**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**"로 한다.

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"**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,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**"에서 교부 한다.

제86조제2항제3항, 제87조제6호에서 "**의장**"을 "**의장 또는 위원장**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2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회의장 안에는 의원, 관계공무원,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**의장이 허가한 자**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	**제82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**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**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 자** ····· .
제83조(방청의 허가) **의장은**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	**제83조(방청의 허가)** **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** ····· .
제85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제) **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** ② 생략 ③ 생략	**제85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** **①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,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.**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86조(방청의 제한)①생략 **②의장이**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**③의장은**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외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.	**제86조(방청의 제한)**① (현행과 같음) **②의장,위원장이**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. **③의장,위원장은**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.
제87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. 1~5. 생략 6. **의장의** 허가 없는 녹음·녹화·촬영행위 7.생략 8.생략	**제87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** ····· ····· 1~5. (현행과 같음) 6. **의장 또는 위원장의** ····· ····· 7.(현행과 같음) 8.(현행과 같음)